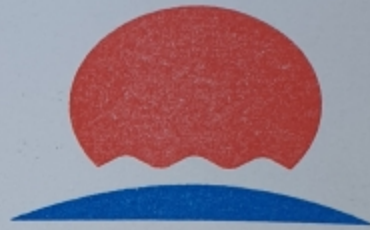
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동 해 시

4. 건설기계검사란

강원04고6017

5. 등록사항변경란
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	연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신규등록일: 2015-01-13								
신규(검사)	2015-01-13	2017-01-12	신규(부활) 등록관청					
정기검사	2017-01-11	2019-01-12	안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삼진				
정기검사	2019-01-14	2021-01-12	안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삼진				
//	2020. 12. 30	2023. 01. 12	//	김삼진				
//	2022. 12. 23	2025. 01. 12	//	김삼진				

※ 주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
 ※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